

장기요양(시설급여) 서비스 제공 계약서 세부내역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_____로 하고,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③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⑤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⑥ ①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입 소 · 이용료 납부 】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25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 일) **선납 납부**하기로 한다. (1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하고, 연체시 연 5% 복리 지연금이 발생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직접수납”으로 한다.
- ④ 납부계좌는 아래와 같다.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KB국민은행	205501-04-162555	에이플러스 물댄동산

- ⑤ ‘갑’ 또는 ‘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로 부담한다.

◇ 시설급여 수가 :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 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개정법)	90,450 원	83,910 원	79,240 원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특별 : 10,000원/일		1인실 : 300,000원/월 2인실 : 200,000원/월
	식재료비(1식)	1일: 9,000원 (1식: 3,000원)		
	간식비(1회)	1회: 1,000원		
	이/미용료등	무료/자원봉사자, 실비/비자원봉사자		
	개인진료비/간호처치비/약재비 등	청구 금액에 따름		

- ※ 외박을 할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 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20%	15%
기초수급권자	0%	0%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12%	9%
	8%	6%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안내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별도부담항목	개인별 병원진료비 및 약값, 기호식품
별도 부담 및 세부 내용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 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은 식재료비의 일종으로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단) 경관영양튜브를 관리하고 유동식을 주입하는데 소요되는 간호사 행위료 및 식사제공을 위한 인건비는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2. 이 / 미용비 : 수급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가능하다. 단) 정기적으로 시설 종사자 및, 자원 봉사자에 의해 제공되어 지는 기본적인 위생 관리 차원의 이/미용 서비스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기타 ▪원거리 외출, 병원방문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수단이용비용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비용.

《 급여이용 정보현황 》

1. 본 요양원 이용 시 입소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급여 이용금액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준 : 월 / 단위 : 원)

구분	급여총액			본인부담율		
				8%	12%	20%
1등급	28 일	2,532,600		202,608	303,912	506,520
			식대포함	482,608	583,912	786,520
1일수가	30 일	2,713,500		217,080	325,620	542,700
			식대포함	517,080	625,620	842,700
90,450	31 일	2,803,950		224,316	336,474	560,790
			식대포함	534,316	646,474	870,790
2등급	28 일	2,349,480		187,958	281,938	469,896
			식대포함	467,958	561,938	749,896
1일수가	30 일	2,517,300		201,384	302,076	503,460
			식대포함	501,384	602,076	803,460
83,910	31 일	2,601,210		208,097	312,145	520,242
			식대포함	518,097	622,145	830,242
3-5등급	28 일	2,218,720		177,498	266,246	443,744
			식대포함	457,498	546,246	723,744
1일수가	30 일	2,377,200		190,176	285,264	475,440
			식대포함	490,176	585,264	775,440
79,240	31 일	2,456,440		196,515	294,773	491,288
			식대포함	506,515	604,773	801,288

1일 3식 + 간식1 = 3,000원 x 3회 + 1,000원 = 10,000원

제4조 【 계약자 의무 】

‘갑’ 과 ‘을’ 그리고 ‘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시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유지)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4. 기타 시설생활 규칙 및 제반지시 이행

② ‘을’ 의 의무

1. ‘갑’ 의 건강관리 협조
2. ‘갑’ 의 신변이상을 ‘병’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및 제반지시 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④ 계약자 본인 이외의 가족은 퇴소를 요청할 수 없으며 퇴소할 시에는 계약자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어길 시에는 요양원은 퇴소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가족들이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가족 및 친족에게 지운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30시부터 16:00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영양실의 배정 】

‘갑’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 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4. 학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 내에서 이용자(갑)가 자연 사망하였을 때
 - 2. ‘을’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 확인 및 동의 】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계약내용, 기간, 비용,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등)	예 ☐	아니오 ☐
2	계약서 작성 시 직원의 설명은 알기 쉬웠습니다.	예 ☐	아니오 ☐
3	노인인권보호지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노인인권지침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4	수급자와의 급여계약 시 외박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5	‘갑’은 ‘을’의 시설에 같이 거주하는 ‘정’ 등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시, 그 회복을 위한 조치 및 비용을 변상하여야 함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	아니오 ☐
6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수가 변경 시에는 변경된 금액을 적용하게 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	아니오 ☐
7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예 ☐	아니오 ☐
8	직원 인권 보호지침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예 ☐	아니오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5년 월 일

(계약자) '갑' 이용자

'을' 대표자 남 진 경

(보호자) '병' 대리인

(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A+물댄동산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수집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수급자(보호자)는 수집, 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비동의시 어르신에 대한 케어상의 위험 및 연락, 정보제공, 협력서비스 연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이용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주소, 연락처, 주소, 병력, 주민번호 등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한 정보)과 대리인(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다. CCTV 영상 기록물 및 기관 활동관련 사진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V로 표시하시고, 서명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설치(운영)장소 : 침실, 공동거실(복도포함),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기타(출입구)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명(관계)	수급자서명	보호자서명
		☐ 동의 ☐ 반대				

라. 장기요양급여관련 정보 및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이용목적

가. 이용대상 어르신의 안전한 케어 및 위험상황 대비

나. 시설안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영상자료 관리

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계법령 준수

이 동의서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도 포함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건강, 장애, 질병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 운전면허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정보			

3. 보유·이용기간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보유하며, 종결 후 5년간 보관 후 폐기

4.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가. 개인(건강)정보는 대상자(보호자)가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나.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공단, 구청 등)의 활용

다.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라.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마.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수 급 자(보호자) :

(서명)

A+물댄동산 대표 귀하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에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폭행, 신체를 강제로 억압,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	육설, 고의적인 따돌림, 무시	노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
성적 학대	방임 및 자기방임	유 기
		
성폭력, 성희롱	의식주,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 129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 등록기관 방문 :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나. 본인확인 : 신분증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다. 상담 및 작성 :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작성

라. 등록 및 효력 발생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영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대표전화 1855-0075

직원인권 보호지침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

입소 관련 동의서

성명		주민번호	
----	--	------	--

◆ CCTV 동의서

본 시설은 입소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및 위급 상황의 재빠른 대처를 위하여 침실 및 생활공간에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녹화중이며 심야 시간(22:00-06:00) 중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의 신상기록 및 정보는 열람이 제한된 곳에서 보관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관의 CCTV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관리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열람 동의서

입소어르신의 장기요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동의합니다.

1. 제공내용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
2. 활용목적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수립
3. 제공기간 : 장기요양급여계약 기간
4.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민감정보 처리
☐ 고유식별정보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안전사고 책임각서

본인(입소자명 : _____) 및 보호자(입소자대리인 : _____)는 A+물댄동산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규칙과 제반지시에 따를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원 조치에 이의를 제기치 않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환자의 개인적인 돌발행동으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 및 보호자(입소자대리인)가 질 것이며, 아래 “예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선행사건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며, 치료 합병증에 대하여 A+물댄동산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불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입소자) 및 보호자(입소자대리인)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예 시 *

1. 치매로 인하여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행동하여 낙상으로 골절상을 입은 경우
2.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골절인 경우(대퇴부, 척추체 압박골절, 기타 부위 골절 등)
3. 개별적 보행 이동시나 부딪혀 넘어져 발생하는 전체적 신체손상(골절 포함)
4. 시설 이동 및 환자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연부조직 등의 손상
5. 시설 활동 시 어르신의 면역기능 저하 등으로 감염될 수 있는 폐렴, 요도염, 장염 등
6. 뇌졸중 등 중증질환, 노령으로 인한 연하기능저하로 인한 흡인성 폐렴 및 갑작스런 질식사고
7. 화장실 좌변기 이용 시 요양보호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다가 주저앉거나 넘어져 발생할 수 있는 골절사고
8. 기타 본 시설 및 요양인의 부주의로 발생되었다고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는 면책
9. 운동, 작업, 재활물리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골절 등 제반 합병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분실사고 책임각서

입소 시 현금 및 귀중품은 반입을 금지하며 필요에 의해 소지할 경우 금품 분실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 및 보호자(입소자대리인)가 질 것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하며 이에 각서를 동의합니다. 본 안전사고 및 분실사고 책임각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진료 위임 동의서

상기 입소자는 여러 질환으로 본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하시는 분으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예상되

1. 이용자 및 보호자는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이용자의 노화, 지병 악화, 합병증 발생에 관하여는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치매자는 돌발행동, 무단이탈, 폭력, 문제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그 보호자에게 있다.
4. 본 기관은 장기요양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1인이 2.1명의 어르신께 서비스 하므로 1:1전담 케어가 불가능하므로 고혈압, 당뇨질환, 어지럼증, 골다공증, 보행장애(편마비), 관절염, 약물과다복용 등의 낙상관련 고위험 질환자에게 낙상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다. 또한, 낙상사고 발생시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의 한도까지로 한다.
5. 대상자의 안전한 케어를 위해 보호자의 동의하에 기관에서의 투약을 허락한다.
6. 기타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 가. 요양원에 신고하지 않은 입소자의 개인물품의 분실
 - 나. 요양보호사와 동행하지 않는 외출을 보호자가 이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사고
 - 다. 병원 진료 또는 외박 등 요양원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

※ 이용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 부씩 보관한다.

보호자는 이용자의 심신 상태의 위험에 대해 충분히 숙지 및 인지하므로 위 내용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보호자 연대로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보호자 (갑)	이 름	(서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관 계	
기 관 (을)	이 름	A+물댄동산	사 업 자 번 호	762-80-01768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 434번길 20			

《행위(신체)구속 동의서》

성명 (수급자)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급자와의 관계	

본인은 "행위(신체)구속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최소한의 행위(신체) 구속 조치로 이용어르신의 행위(신체)와 인격을 보호 / 존중할 것을 믿으며,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신체)구속 조치에 동의합니다.

- 행위(신체)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행위제한 : 일시적으로 행위(신체)를 구속하고 행동을 제어하는 조치)
 - 급격한 폭력 성향 및 흥분 등으로 위험 및 심각한 불안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
 - 본인 및 타인(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절박성)이 높은 경우
 - 낙상 우려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등
 - 기타 : _____

※ 참조 : 행위(신체)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본 기관은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및 행위(신체) 제재시간, 사유 등을 기록하여 통보하겠으며, 이용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위(신체)억제의 종류
단, 침대 안전바, 휠체어 안전벨트 및 식판, 목욕 의자 벨트, 목욕카 안전바 등은 낙상위험 방지를 위한 보완 도구로도 이용됩니다.

☐ 침대 안전바	☐ 휠체어 안전벨트	☐ 휠체어 식판	☐ 손목(좌, 우)
☐ 우주복	☐ 손 장갑(좌, 우)	☐ 가슴 억제대	☐ 격리(1인실)
☐ 목욕의자 안전벨트	☐ 목욕카 안전바	☐ 기타 :	
- 제재 시간
 - 식사 시 제재 (아침, 점심, 저녁) ② 야간에만 제재(시간: _____)
 - 기타제재시간 : 위급한 상황 시, 낙상 예방을 위한 필요 상황 시
- 위와 같이 수급자의 상태가 절박성, 비대체성, 일시성으로 인하여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고 사용하겠습니다. 결과 기록 자료를 기록하여 최소한의 사용과 수급자의 존엄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실시됨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수급자(보호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A+ 물 댄 동 산